#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735

발의연월일: 2022. 12. 7.

발 의 자: 안규백·강선우·김병기

김수흥 · 김홍걸 · 민병덕

송갑석 • 이형석 • 정일영

최기상 • 한기호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일반업체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인가를 받아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기구의 제작·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은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 법률 제 호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1.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 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는 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
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
있다.	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u>있다.</u>
	1.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
	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
	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
	연구기관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